

몽골의 2003년 협약 이행 및 무형유산 보호 과제

우르트나산 노로브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이사장

유네스코 2003년 협약 이행을 위한 몽골의 활동과 경험

모든 국가와 민족 집단의 무형유산은 지역, 환경, 경제생활 방식, 언어와 다양하고 고유한 문화역사 여건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각국의 무형유산은 각각의 고유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세계 문화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차지한다.

몽골 국민과 몽골계 민족 집단은 전 세계 인구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다. 동서로 알타이 산맥에서 다싱안링 산맥, 남북으로 바이칼 호수에서 중국의 만리장성 사이에 펼쳐진 광활한 땅은 몽골인과 그들의 조상들이 유목생활을 하며 살아 온 터전이다. 다뉴브 강에서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유라시아 초원의 일부에 속하는 이 지역에 목축을 바탕으로 한 유목문화와 농경에 기반을 둔 정주문명이 공존해 왔다.

몽골인들은 광활한 중앙아시아에서 가축을 키우며 고유한 경제생활 방식과 생산 활동을 발전시키면서 지금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유목문화와 문명을 이룩했다. 몽골인 삶의 터전인 이러한 자연 배경과 독특한 문화 공간이 몽골 무형유산과 민족 고유성을 규정한다.

몽골 정부는 고유한 문화유산 보전을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 왔다. 민족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고양시키자는 열의를 국민들 사이에 고취시켰다. 이 열기는 아직

도 계속되고 있다. 몽골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수많은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몽골 의회는 무형유산의 사회 기능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 역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몽골 문화정책(Mongolian State Cultural Policy)’, ‘새천년 개발 목표에 기초한 몽골종합개발전략(Millennium development Goals-based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Mongolia)’, ‘문화재 보호법(Law for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을 수립했다.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전승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노력도 더 많이 기울였다.

몽골 대통령은 전통악기인 모린 쿠르(Morin Khuur, 말머리 현악기)의 연주, 전통 장가인 후미(khumei, 목 노래), 전통 무용인 비엘게(biyelgee) 등 몽골의 뛰어난 무형유산 종목의 존중과 보호를 위한 법령을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는 2003년 협약 이행의 틀 안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국가등록-정보(인벤토리 작성) 시스템’의 수립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산하 문화유산센터는 몽골 정부 기관과 행정 인프라를 기반으로 ‘무형유산을 위한 통합 등록-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몽골 인벤토리는 유네스코 2003년 협약에서 지정한 무형유산 영역과 동일한 분류 체계를 따른다. 2010년에는 몽골 전체 행정 단위의 85%를 대상으로 ‘무형유산과 전승자의 기본 등재 사업(Primary Registration Work of ICH and its Bearers)’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총 88개 무형유산 종목과 전승자 5701명이 지정되었다. 무형유산 등록부 마련은 무형유산 보호 및 전승을 위한 장단기 목표 설정과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에 귀중한 자산이 된다.

몽골은 유네스코 협약 비준 이후 무형유산 9개 종목을 등재했다. 등재된 무형유산 종목 보호를 위해 몽골 정부는 국가 중장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을 기준 틀로 삼아 행정 단위인 아이막(aimag, 도)과 쑤(sum, 군)은 하위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몽골 문화부, NGO, 지역사회기반 조직, 민족 집단, 연행자들이 주축이 되어 전통문화축제를 비롯해 전승대회 및 전통공연예술과 공예에 관한 전시회를 정기 개최한다. 현재 몽골에는 무형유산과 전승자의 보호와 장려를 위한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는 30여 개의 NGO가 있다. 이들은 그 밖에도 몽골의 각 도와 도시에서 전통 문화와 예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으며, 진전도 상당히 이루어졌다.

2003년 협약 이행에 따른 국제지역 협력 활동

몽골은 국제 협력으로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개발도상국 가운데 하나다.

몽골은 1997년 이래 유네스코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몽골 전문가들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서 적극 활동했다. 1998년에는 유네스코 후원과 일본신탕기금(JTF)의 재정을 지원받아 국제 심포지엄·축제 ‘중앙아시아 서사음악(Central Asia Epic)’을 개최했다. 당시 유네스코 고문 아이카와 노리코(Noriko Aikawa)가 기꺼이 동참하고 몽골문화계 주요 인사와 예술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NGO 형태의 국립무형문화유산센터(National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설립, 무형유산 전승자와 연행자 등록, 오디오 녹음, 시청각 기록, 각종 문서 작업을 위한 중요한 활동에 착수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한국 문화재청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유네스코 산하 C2 기구)의 도움으로 몽골은 관련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무형유산 인벤토리 기금 설립, 유네스코 인간문화재제도(Living human treasure system) 도입 등 일련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유네스코 인가 NGO인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2007년 이후 한국-몽골 공동프로젝트인 ‘유네스코 인간문화재제도의 몽골 도입’을 실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체계 수립’이라는 양국 공동 협력프로젝트 형태로 계속 실시되고 있다.

공동 프로젝트의 결과 및 성과

- 2008년과 2009년 무형유산 및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양국의 주요 이슈·현안에 관한 심포지엄, 워크숍을 울란바토르와 서울에서 각각 개최했다.
- 2008년과 2009년 양국 전문가들의 현장 답사 및 연구 탐사가 몽골과 서울에서 각각 이루어졌다.
- 무형유산 보호에 유리한 법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유산 관련법을 정비하고 ‘무형유산의 지정과 등록 규정’ 및 ‘무형유산과 전승자 지정 국가위원회 규정’ 등 지원 문서를 마련했으며, 2009년 해당 결과물의 몽골 문화부 장관 승인을 받았다.
- 무형유산 국가목록을 수립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 세계문화유산 목록의 등재를 위한 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준비 작업에 몽골 전문가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졌다.

- 선정된 몽골의 서부·중앙·동부와 고비 지역의 아이막(aimag)에서 무형유산 및 전승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무형유산 종목과 새로운 전승자를 발굴, 등록하고 관련 사항을 기록으로 남겼다.
- 무형유산의 가시성 제고를 위해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 종목에 관한 사진전을 개최했다.
- 무형유산 전승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고취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가이드 북 ‘몽골의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Mongols)’을 제작하여 정책 입안자, 무형유산 전문가, 문화 관련 종사자 및 교사에게 배포했다. 몽골 기관들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열린 평가 회의에서 이 프로젝트를 향후 정보와 네트워킹의 틀 안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보와 네트워킹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안이다. 2010~2011년 2년에 걸쳐 신규 공동 프로젝트 ‘IT 활용을 통한 몽골 무형유산 보호’를 실시했다. 이 기간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몽골과학아카데미의 언어문학연구소, 몽골 공영방송 MNPR, 몽골 국립기록관리소의 영화사진영상기록물센터에 보관된 노후되고 훼손된 무형유산 관련 자료의 복원과 디지털화를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앞에서 언급한 무형유산과 관련된 노후하거나 훼손된 아날로그 기록물의 복원 및 디지털화는 무형유산 보호에서 대단히 중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무형유산 관련 자료의 국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 네트워킹상에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관련 프로젝트로 전체 713시간 분량의 자료가 700기가바이트에 이르는 디지털 자료로 보관되었다. 복원과 디지털화를 위해 사용된 파일들은 언어문학연구소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보관 중이었다.

영상 기록물의 디지털화, 분류체계 확립,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앞으로 연구조사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되고 관심 있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프로젝트 결과물 10장으로 이루어진 CD선집이 배포용으로 제작되었다. 몽골은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으로 노후한 아날로그 테이프의 복원과 함께 디지털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 밖의 중요한 결실로 몽골 무형유산 웹사이트가 제작되었으며, 유지관리와 업데이트가 지속 이루어질 예정이다. 웹사이트는 참고 도구로 역할을 수행하여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한편 무형유산의 보호와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현재 새로운 무형유산 정보기술(IT)을 활용한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IT 기술을 활용한 무형유산의 보호, 복원 및 보존, 보급 및 전승이 국제·지역·국가 차원에서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 및 문화의 다양성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몽골과 중국 양국 정부는 공동으로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한 다국적 무형유산인 ‘전통 민요 장가-우르틴두(Urtiin Duu)’와 관련하여 공동 집행위원회를 수립하고 몽골, 중국, 러시아 연방의 전문가와 학자가 참여한 우르틴두 공동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지역은 몽골계 민족이 거주하는 3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수집된 연구 및 문헌자료는 공유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는 몽골계 민족의 우르틴두 문집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몽골의 과제

몽골은 급격한 세계화와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형유산이 진행되는 공간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현대 대중문화와 예술 추세는 몽골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전통 유목문화와 관련한 무형유산이 단시간 내에 사라질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 도시화 추세, 도시로의 인구 유입, 세계화, 대중문화, 획일화된 교육, 무분별한 관광산업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문화유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존경심은 잃어 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 역사 관련 이유로 몽골 전통 무형유산은 실제로 위축되고 있고, 일부 몽골 지방에서는 거의 소멸 상태에 처해 있다. 이것이 현재 몽골의 주요 관심사다.

몽골 무형유산 보호, 보존, 증진을 위한 다음의 조치가 긍정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나라의 주요 무형유산 전승자는 모국어 사용한다. 따라서 몽골어를 보호하고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몽골인의 신성한 의무다. 부모와 가족은 자녀에게 뛰어난 모국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족 단위와 더불어 무형유산의 주요 보호자이자 지지자는 민족 집단과 지역사회다. 이들의 역할은 유네스코 협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무형유산의 전승 체계가 국가와 민족 집단의 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초등 및 일반 교육 단계의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몽골어, 몽골문화를 가르치는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풍습과 의식의 연행자, 전통의 가축사육법 대가, 장가(long-song) 연행자, 전통악기 연주자, 전통무용 연행자 및 장인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시급한 당면 과제는 뛰어난 무형유산 연행자를 선정하고 장려하고 명예를 부여하는 한편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 전수생 교육을 확대해 나아가는 일이다.

지방행정 단위인 박(bag, 면) 또는 쉼(sum, 군), 심지어 가족 단위의 가축 사육자나 농부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유목과 농경 관련 의식·관습·축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몽골 무형유산의 전파와 보급을 위한 정책을 국제 및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문화의 전파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문화유산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몽골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몽골 연구와 세계 유목무형문화 연구에서 중심이자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을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규모 몽골 연구를 추진하고 다양한 무형유산 종목을 대표목록에 등재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관광을 몽골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새로운 문화상품 소개, 문화 현장 신설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제 베트남 사례 중심으로

티민리 레

베트남 문화유산가치증진연구센터 소장

초록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베트남의 무형유산 보호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 글은 무형유산보호협약 정신을 계승하여 문화유산법(Law on Cultural Heritage)을 개정하고 무형유산 목록작성을 당면 과제로 삼은 베트남의 경험을 제시한다. 목록작성은 어떻게 수행하는가? 목록작성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문화유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가? 이론과 실재는 큰 차이가 있다. 본고는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의 사례를 분석한다.

목록작성은 단지 무형유산의 종목 수와 유형을 파악하여 보고하기 위해 대규모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위협에 처한 문화유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지역 당국이 위협에 처한 유산을 대상으로 긴급 보호 조치 메커니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 하노이 시의 무형유산 목록 작업에 참여하는 관계자들과 협력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다.